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검 토 보 고

〈사회연대경제 육성에 관한 기본법 제정〉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22호)
- 김동아·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79호)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2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42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김동아의원·최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479호) ...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727호)	4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IV. 검토의견	6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6
2.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지원체계	11
3.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5

4. 조문별 검토(제1장): 총칙	21
가. 목적, 기본원칙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21
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정의	27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36
5. 조문별 검토(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39
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39
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53
6. 조문별 검토(제3장):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57
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57
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및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 ..	67
다.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75
7. 조문별 검토(제4장): 사회연대금융 및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 79	
가.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79
나.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의 조성	85
8. 조문별 검토(제5장):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 육성	90
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등 우대 조치	90
9. 조문별 검토(제6장 · 제7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 및 벌칙 ...	103
가. 운영의 공개, 경영공시 및 벌칙	103

I.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42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62인

나. 발 의 일 : 2025. 8. 27.

다. 회 부 일 : 2025. 8.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와 사적서비스 영역 사이에는 소외된 경제영역이 존재하며,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소외된 경제영역을 공공영역이 복지로 부담하기에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필요하고, 사적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서비스비용이 높아져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음.

이 부분을 채워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취약계층을 시장경제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이나 그 동안 각 영역 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II. 김동아의원·최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47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동아의원·최혁진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8. 28.

다. 회 부 일 : 2025. 8.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사회는 양극화, 지역 격차, 고령화, 청년 실업,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 시장 중심 성장 패러다임만으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주체들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에 기여하며 새로운 대안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사회와 지역 기반의 협력을 통해 ‘돌봄·연대·공존’에 기반한 생활 영역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기본사회’의 구성 원리와의도 맞닿아 있음.

기본사회란 가족, 마을, 협동조합, 공공서비스, 복지 등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지탱하는 돌봄·관계·공동체의 기반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뜻하며, 사회연대경제는 바로 이러한 기본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반이자 실천의 장이라 할 수 있음.

국제적으로도 UN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2023)’을 채택하고, 2025년을 두 번째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국가의 대안적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개별법에 의존해온 탓에 통합적인 지원체계 부재, 부처별 정책 전달과 관리의 비일관성, 칸막이 행정, 중간지원조직의 분절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범주, 참여 주체의 권리·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협력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정책 영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국제연대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지구적 연대와 지역 기반 대안경제의 선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본 법률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임.

Ⅲ.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72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5.

다. 회 부 일 : 2025. 9.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갈등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이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경제성장의 지속 및 사회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해외 각국에서는 불평등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주목 받고 있으며, 프랑스나 스페인 등에서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여 왔으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공통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별법 간 중복이나 충돌이 발생하거나 해당 조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각 제정안은 사회연대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한국사회연대경제원 등 추진체계 마련,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각 제정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

복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 사회연대경제조직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어업법인·조합·회사·단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등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없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없음)	- 지역자활센터	- (없음)
- 지역축협	- (없음)	- 지역축협
-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없음)	- (없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획재정부장관) 기본계획 / 5년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본계획 / 5년	(기획재정부장관) 기본계획 / 5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부문별 시행계획 / 매년	(중앙행정기관장) 부문별 시행계획 /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부문별 시행계획 / 매년
(시·도지사) 시도별 시행계획 / 매년	(시·도지사) 시도별 시행계획 / 매년	(시·도지사) 시도별 시행계획 / 매년

북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 위원회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 위원장 1명(기재부장관) 포함 40명 이내 위원 ·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국회 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정당의 위원추천 ·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처 설치	- 사회연대경제위원회 · 대통령 소속 · 위원장 2명(중기부장관, 민간위원) 포함 40명 이내 위원 ·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중기부소속 사회연대경제기획단 설치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 위원장 2명(기재부장관, 민간위원) 포함 30명 이내 위원 ·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국회 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정당의 위원추천 ·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처 설치
-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	- 지역사회연대경제위원회 · 시도지사 기초지체장 소속	-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
○ 지원기관		
- 한국사회연대경제원 · 기재부 소관 · 기재부장관 출연 · 기재부장관 운영·감독 총괄 · 그 밖에 자료요구권, 비밀누설금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 한국사회연대경제원 · 중기부 소관 · 정부 출연 · 중기부장관 운영·감독 총괄 · 그 밖에 자료요구권, 비밀누설금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 한국사회연대경제원 · 기재부 소관 · 정부 출연 · 기재부장관이 행안부장관 및 고용부장관과 협력하여 운영·감독 총괄 · 그 밖에 자료요구권, 비밀누설금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 시·도지사 설치 (임의)	-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 시·도지사 설치 (필수)	-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 시·도지사 설치 (필수)
○ 사회연대금융		
- (없음)	- 사회연대금융 제도정비	- 사회연대금융 제도정비
- (없음)	- 사회연대금융기관 지정·육성 · 재정적·행정적 지원 가능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기금		
- (없음)	- (국가)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 국가·지자체 출연금, 정책기금 전입금 등 재원 · 사회연대금융기관에 위탁 운영 가능	- (없음)
- (없음)	- (없음)	- (지자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가능

복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 (없음)	- (민간) 사회연대금융기관 수행사업으로 민간기금 조성 규정	- (민간)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사회연대금융기관 설치 기능 · 정부는 출연 등 재정지원 기능
○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사항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우선구매 촉진 의무	- (공공기관 우선구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상 우선구매 노력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계 획에 사회연대경제조직생 산품을 구분하여 포함
- (없음)	- 국가자자체 사무 민간위탁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 고려	- 국가자자체 사무 민간위탁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
- 부자기업바사설비 등 지원용자	- 부자기업바사설비 등 지원용자	- 부자기업바사설비 등 지원용자
-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	-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양여	-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
- 개별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 개별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 개별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 그 밖에 교육훈련, 협력· 연대 촉진, 국제협력 등	- 그 밖에 교육훈련, 협력· 연대 촉진, 국제협력 등	- 그 밖에 교육훈련, 협력· 연대 촉진, 국제협력 등
○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		
- (없음)	- (운영 공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회연대경제조직 · 정관 등 운영규정, 총회·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	- (운영 공개) · 사회연대경제조직 ·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 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
	- (경영공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회연대경제조직 · 정관 등 운영규정, 총회·이사 회 의사록, 사업결산보고서	- (경영공시) · 사회연대경제조직 · 정관 규약 규정,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 업결과보고서, 임원현황, 사회적가치보고서 등 추 가 공시

복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직무상 비밀누설 · 3년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벌금	- (없음)	- (벌칙) 직무상 비밀누설 · 3년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벌금
- (과태료) 유사명칭사용 · 500만원 이하	- (과태료) 유사명칭사용 · 500만원 이하	- (과태료) 유사명칭사용 · 500만원 이하

참고로, 동 법률안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 3건이 발의되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 중임.

< 사회연대경제 관련 소위원회 계류 법률안 >

법률안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황명선의원	2201643	24. 7. 11.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용혜인의원	2205197	24. 11. 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2208562	25. 2. 27.

한편, 과거 제19대~제21대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바 있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음. 과거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연대경제 관련 과거 발의 법률안 >

국회	법 률 안 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심사결과
제19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1910422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신계륜의원	1912030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박원석의원	1912395	임기만료폐기
제20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2001614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2002616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강병원의원	2019005	임기만료폐기
제21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2101880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강병원의원	2102535	임기만료폐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2104663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장혜영의원	2104988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양경숙의원	2105051	임기만료폐기

2.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지원체계

“사회연대경제”는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나,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¹⁾²⁾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가치 및 형평성을 중심으로 사회 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민주적 참여와 수익배분 제한을 통한 사회적 소유를 강조하고,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국가와 시장에서 미충족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계기로는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로서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1) 유사한 맥락에서 ① 유럽연합(EU)은 사회적경제를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 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②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 2) 그 외에도 사회연대경제는 제3부문(the third sector), 비영리섹터(non-profit sector), 자활 조직(voluntary organizations), 시민경제(civil economy),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됨

<사회연대경제 법제화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포용적 성장”과의 관계>

○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법률제정 국가 현황

- 스페인(사회적경제법, 2011), 에콰도르(서민연대경제금융법, 2011)
멕시코(사회연대적경제법, 2012), 캐나다 퀘벡(사회경제법, 2013)
포르투갈(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 2013), 프랑스(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2014)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개념

-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이며,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음
- EU : 지역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까지 포함하여 공동체 모두에게 성장의 이익이 고르게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용적 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
- OECD : 포용적 성장을 경제성장으로부터의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 걸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경제성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UN : 2015년 9월 발표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핵심원칙 중 하나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No one left behind)」을 제시하여 개발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개별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조직 형태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 주요 개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현황 >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시작 연도	2007년	2012년	2010년	2012년
주요 참여자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수 ('24년말)	3,762개	26,520개	1,800개 (23년말)	962개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은 '24년부터 폐지)		권역별 마을기업지원센터 17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16개 지역자활센터 250개
지원내용	· (경영) 성장지원센터 운영, 판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컨설팅 · (세제) 법인세 · 소득세 · 지방세 감면 등	· (경영) 설립·운영 자문 및 정보제공, 교육·홍보,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 (재정) 사업비 · (경영) 컨설팅, 교육·홍보	· (재정) 인건비 ·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교육·홍보
2025 예산	284억원	16억원	17억원	수급자수 기준 자활근로 인건비 지자체 보조 (자활기업 인건비 별도 편성 X)

※ 자료: 기획재정부, 2025. 4.

다만, 그간 우리나라의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는 개별 사회연대경제 조직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고, 지원기관도 다양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온 것으로 보임. 특히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일선 집행단위에서는 각 사업간 연계성이 큼에도 주무부처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관리 등이 제각기 진행되어 비효율적

이고 행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원정책 수행에 있어 총괄조직을 기획재정부(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사회연대경제원으로 일원화하여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회연대경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3.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21대국회에서는 1번의 공청회³⁾와 4번의 법안소위⁴⁾, 1번의 안건조정위⁵⁾를 통해, 제20대국회에서는 1번의 공청회⁶⁾와 4번의 법안소위⁷⁾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제21대국회와 제20대국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사회적가치·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정의, 추진체계 일원화, 우선구매 등 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음. 주요 논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제21대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요지 >

쟁점	찬 성	반 대
법 제정 필요성	○ 코로나19 하에서 심화된 빈부격차, 고용불안과 같은 시장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 [소위원회('20.11.23.)] ○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이므로 기본법 제정이 필요 [소위원회('20.11.23.)]	○ 이미 개별법하에서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본법 제정이 아니라 개별 정책으로 시장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함 [소위원회('20.11.23.)] ○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여러 분야를 하나로 묶어 법을 제정할 경우 상충이 발생하고 협동조합, 자활기

3)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1. 6. 15.)

4)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0. 11. 23.)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3. 3. 15.)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3. 3. 21.)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3. 5. 15.)

5)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2021. 12. 31.)

6)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16. 11. 2.)

7) 제356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8. 2. 1.)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8. 8. 24.)

제363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8. 8. 29.)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9. 3. 27.)

쟁점	찬성	반대
	○ 정부·지자체가 추진동력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 [소위원회('20.11.23.)] ○ 사회적경제는 고용,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법 제정 필요 [소위원회('23.3.15.)]	- 업, 마을기업 등의 조직을 통할하는 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소위원회('20.11.23.),('23.3.15.)] ○ 지자체와 각 중앙부처를 포괄해서 기재부가 종합적으로 끌어나가는 것은 현재의 경제 운용 기본구조와 상반되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올 우려 [소위원회('23.3.15.)]
사회적가치·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의	○ 일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자리 부분이 제외되어서는 안됨 [소위원회('23.3.21.)] ○ 지역별로 사회적경제기업 포함 여부를 제한하거나 고용자 수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동력을 감소시킬 우려 [소위원회('23.3.21.)] ○ 농협 가운데에서도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사회적경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 [소위원회('23.3.21.)]	○ 사회적가치로 열거된 내용이 상호 충돌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실행과정에서 범위가 막연해질 우려 [소위원회('23.3.21.)] ○ 금융기관과 상호부조 기관들을 포함한 중앙회, 연합회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소위원회('23.3.21.)] ○ 사회적경제기업 포함 여부 기준을 지점별 인원 수, 자본금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경제부문과 일자리부문 배제가 바람직[소위원회('23.3.21.)] ○ 개별법상 기업이나 조직들이 사회적경제법 안에 포함되면서 존속 취지나 목적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해질 우려[소위원회('23.3.21.)]
추진체계 일원화	○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필요 [공청회('21.6.15.)] ○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기본법 부재로 인해 통합 조율을 통한 운영상 효율성을 갖추지 못함 [공청회('21.6.15.)] ○ 사회적경제법을 전제로 법을 실행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 [소위원회('23.5.15.)]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오히려 정치 쟁점화되어 사회적경제의 발전 저해 우려가 있고 위원회의 중립적 운영 조문이 필요[소위원회('23.5.15.)]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개별 조직 간 상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정도로 국한할 필요[소위원회('23.5.15.)] ○ 공공기관 신설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쟁점	찬성	반대
	○재정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재부 산하의 사회적경제원 신설이 필요[소위원회('23.5.15.)] ○자본주의에 충실한 조직인 기재부에 경제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회적경제원 신설시 총리실 산하가 타당[소위원회('23.5.15.)]	될 수 있으므로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불필요 [안건조정위('21.12.31.)] ○사회적경제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망라하고 있는 문제[소위원회('23.5.15.)]
지원 및 우대조치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자생력을 없앨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 [소위원회('20.11.23.)] ○선언적으로 우선구매 등 지원규정 필요[소위원회('23.5.15.)]	○개별법상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원 확대는 정부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우려 [소위원회('20.11.23.)] ○사회적경제법에 우선구매 규정이 추가되면 구매의 자율성이나 품질 보장이 훼손될 우려 [소위원회('23.5.15.)] ○우선구매 규정이 필요하다면 개별법에서 규정[소위원회('23.5.15.)]
그 외 논의 사항	○형식적 입법을 막기 위해 사회적 측면 뿐만 아니라 예산 등 경제적 측면이 성실히 반영될 필요 [소위원회('20.11.23.)] ○2008년 이후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사회적경제가 강조되었으며 2009년 EU에서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 [공청회('21.6.15.)]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 사항은 지자체나 관련 기관들에서 협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소위원회('23.5.15.)]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어 자생적 사회적경제조직의 탄생을 저해할 우려 [공청회('21.6.15.)] ○사회적경제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정치적 활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소위원회('23.3.21.)] ○기본법인 사회적경제법에서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구성과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 방향 [소위원회('23.5.15.)]

< 제20대국회에서 주요 논의 요지 >

쟁점	찬 성	반 대
법 제정 필요성	○양극화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음 [공청회('16.11.2.)] ○사회적경제를 통해 노동시장, 소비 시장, 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음 [소위원회('18.8.24.)]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정부와 소통할 창구가 부족하여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소위원회('18.8.24.)] ○사회적 자본 확대·지역경제 활성화·사회안전망 확충 등 효과 기대 [공청회('16.11.2.)]	○현행 개별법 외에 별도 기본법 제정 필요성·실효성에 의문 [소위원회('18.2.1.), 공청회('16.11.2.)]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정부 및 지자체 업무의 과도한 증가 예상 [소위원회('18.2.1.)]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자생성, 다양성을 해칠 우려 [공청회('16.11.2.), 소위원회('18.8.24.)]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획일화 우려 [공청회('16.11.2.)]
추진체계 일원화	○기본계획 수립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조직이 필요함 [소위원회('18.8.24.)]	○조직별 성격이 상이하여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바람직한지 우려됨 [소위원회('18.2.1.)]
기재부 총괄기능	○기재부가 출괄부서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정지원 등 민원 해결 가능 [소위원회('18.2.1.)] ○기재부에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가 있어야 하므로 경제원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소위원회('18.8.24.)]	○기재부는 거시경제정책 등 전략·정책기능에 충실해야하므로 기재부 산하 경제원 설치 반대 [소위원회('18.8.24.)] ○사회적경제원에 정책 조사기능만 둔다고 하더라도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소위원회('19.3.27.)]
중간지원 조직	○지방의 고유한 사회적경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지원센터 등 설치 필요 [소위원회('18.8.24.)]	○권역별지원센터 등 불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 [소위원회('18.8.24.)]
사회적 금융	○사회적배려 차원에서 국가가 사회적금융을 지원할 필요 [소위원회('18.8.24.)]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필요 [소위원회('18.8.24.)]	○사회적금융으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가능성 [공청회('16.11.2.)] ○사회적금융 및 이에 대한 정부 출자출연의 타당성에 추가적인 논의 필요 [소위원회('18.8.24.)]
우선구매 조항 등 지원조항	○구매의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 [소위원회('18.2.1.)]	○우선구매 의무화는 조달부문 투명성 저해 및 형평성 측면 우려 [공청회('16.11.2.), 소위원회('18.2.1.)]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방식을 고민할 필요[공청회('16.11.2.)]

한편, 제정안과 별도로 현재 개별 사회연대경제조직 영역별로 근거 법률 및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 중임. 현행 개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영역별 관리체계와 제정안을 개략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과 현행 개별적 사회연대경제조직 영역별 관리체계 >

구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개별법 및 지침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도시재생법/ 마을기업육성 사업시행지침 (마을기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자활사업지침 (자활기업)
목적	사회연대경제 체계적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동촉진	마을기업 육성	자활기업 육성
참여자	사회연대경제조직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저소득층
계획 수립	기본계획 (5년, 기재부)	기본계획 (5년, 고용부·시도)	기본계획 (3년, 기재부)	-	기본계획 (3년, 복지부)
	시행계획 (관계부처·시도)	시행계획 (고용부)	-	-	-
추진 체계	위원회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협동조합정책 심의위원회	-
	중앙	한국사회연대경제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광역	-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자체	시도별 지원센터	성장지원센터 (19개)	-	지역자활센터 (250개)
지원 수단	재정 지원	연합조직 운영비 또는 사업비	-	-	사업비
	판로 촉진	우선구매	우선구매 촉진	우선구매 촉진	-
	국유 재산	대부 또는 사용	대부 또는 사용	-	-
	기타	설립지원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설립지원 경영컨설팅	경영컨설팅
정보 공개	운영 공개	의무	-	의무	-
	경영 공시	의무	자율	의무	-

※ 자료: 기획재정부, 2025. 4.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사회연대경제가 소득 양극화, 고용 불안,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간 개별 법률에 따라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을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연합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기금 설치, 우선구매 의무비율 등 일부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제정안은 사회연대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책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 등 시장경제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이미 제정안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각 개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오히려 사회연대경제 부문의 자생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본법 제정 여부는 과거의 국회에서 논의된 찬·반 근거, 개별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현황, 외국 입법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4. 조문별 검토(제1장): 총칙

가. 목적, 기본원칙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북기왕 의원안 (안 제1조제2조제4조제5조)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안 제1조제2조제4조제5조)	정태호 의원안 (안 제1조제2조제4조제5조)
○ 목적 -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	○ 목적 - 공동체의 성장과 국민의 질 향상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 목적 -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
○ 기본원칙 -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 우선 -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운영 - 이익을 구성원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 지역공동체 개발 및 지역순환경제발전을 위해 상호부조·협력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시책 수립·시행 -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대국민 사회연대경제 교육·홍보 노력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적정 자원 확보 노력 등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책무 - 기본원칙 준수 및 사회적가치 실현·확산 노력,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 노력, 경영 투명성 제고, 노동·인권·환경 등 사회적책임 사항 준수		

각 제정안의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추구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각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적 이익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여야 하고, 이익을 구성원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함.

이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일부 개별법상에 규정된 “조합원에 대한 최대 봉사의 원칙”의 조직 운영원리⁸⁾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 제정안 원문

북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를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우선시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3항, 제14조제7항, 제16조제8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갖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이익은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우선 활용하여야 한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하며,

복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민	다. 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상호부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순환경제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	이익의 사용과 배분에 있어서는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광역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초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

복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간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 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적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육·홍보에 힘써야 한다.	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운동을 보충성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시행·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민간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 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육·홍보에 힘써야 한다.
제5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연대 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	제5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연대 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	제5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연대 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

복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노동·인권·환경·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상호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공구매 확대, 공유자산 형성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노동·인권·환경·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정의

북기왕 의원안 (안 제3조)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안 제3조)	정태호 의원안 (안 제3조)
○ 사회연대경제 - 양극화 해소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사회연대경제 - 사회 구성원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사회연대경제 - 양극화 해소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사회연대경제조직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농어업법인·조합·회사·단체, 지역농협·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농협중앙회·조합공동사업법인,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중앙회·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중앙회·조합공동사업법인, 연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신협·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소셜벤처기업	○ 사회연대경제조직	○ 사회연대경제조직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없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없음)	- 지역자활센터	- (없음)
- 지역축협	- (없음)	- 지역축협
-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없음)	- (없음)
- 사회연대경제중간지원조직 : 중앙행정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조직		
-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북기왕 의원안 (안 제3조)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안 제3조)	정태호 의원안 (안 제3조)
	○ 사회연대금융 - 사회문제 개선, 사회적가치 증진 및 참여자 경제적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 대상 투자·융자·보증·출연 등 금융활동과 이에 준하는 지원	○ 사회연대금융 -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각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제정안은 이 법안의 주된 규율대상이 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각종 지원대상이 되며, 기본계획·지원체계·운영상 의무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어떤 조직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인지 여부는 이 법률안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각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에 그동안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외에 농어업법인·조합·회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복기왕 의원안 및 정태호 의원안에 포함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복기왕 의원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추가하고 있음.

제정안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각 제정안에 포함된 조직 중 일부 조직은 공익적 목적과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농어업법인·단체” 중 “농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기업적 농업경영체로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영리 조직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있을 수 있음.⁹⁾

9) 참고: 농어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비교

둘째, 복기왕의원안에 포함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활 촉진을 위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20대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음.

셋째,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에 포함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비·인건비 등 전액을 보조받아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제정안의 사회연대경제조직과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구분	농업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주식)	영농조합법인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인의 성격	‘기업적 농업경영체’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협업적 경영체’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 제정안 원문

북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연대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

북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

북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자회사 및 같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하는 수협은행은 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셜벤처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3.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4호에 따른 사	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하는 수협은행은 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차. 「엽연초생산협동

북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복지	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5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협력조직 라.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조직 4.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연대경제 협력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지역·업종·부문·분야 등에 근거하여 결성된 협의체·연합체 등 연대조직을 말한다. 6. “사회연대금융”이란 사회문제의 개선과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참여자의 경제적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거. 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너. 제18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더. 그 밖에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복기왕 의원안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너. 제3호에서 정한 사회연대경제 중간 지원조직 더. 제18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러. 그 밖에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 3. “사회연대경제 중간 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투자·융자·보증·출연 등 금융활동과 이에 준하는 지원을 말한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 3. “사회연대경제 중간 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연대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복기왕 의원안 (안 제6조)	김동아·최혁진 의원안 (안 제6조)	정태호 의원안 (안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법률 제·개정 원칙 -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회연대경제의 개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법률 제·개정 원칙 - 사회연대경제의 개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법률 제·개정 원칙 -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각 제정안은 사회연대경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이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밝힌 것임.

또한, 향후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 제정·개정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률의 모법이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연대경제의 개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연대경제의 개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조문별 검토(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북기왕의원안 (안 제7조~제10조)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안 제7조~제12조)	정태호의원안 (안 제7조~제10조)
○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 / 5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심의 - 기재부장은 기본계획 확정·변경 시 국회 보고	○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정부 / 5년 - <없음> - 국무회의 및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심의 -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보고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 / 5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심의 - 기재부장은 기본계획 확정·변경 시 국회 보고 - 국가재정운용계획, 협동조합 기본계획,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
○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 - 기재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매년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기재부장관에 제출하여 위원회 상정	○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매년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제출 및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 - 기재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매년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기재부장관에 제출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상정
○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도지사 / 매년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기재부장관에 제출하여 지역위원회 상정 - 그 밖의 사항 조례 위임	○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도지사 / 매년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의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 - 그 밖의 사항 대통령령 위임	○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도지사 / 매년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기재부장관에 제출하여 위원회 상정 - 그 밖의 사항 대통령령 위임

복기왕의원안 (안 제7조~제10조)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안 제7조~제12조)	정태호의원안 (안 제7조~제10조)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 위원회는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보고 - 위원회는 평가자문단 설치 또는 전문평가기관 지정·운영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혜택 부여 또는 포상 가능 ○ 다른계획과의 관계 -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계획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 위원회는 추진실적을 평가 - 위원회는 평가자문단 설치 또는 전문평가기관 지정·운영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재정 지원, 포상 가능 ○ 시행계획의 협의·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행계획이 해당 시행계획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협의·조정하여야 함 ○ 다른계획과의 관계 -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계획에 우선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본계획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운용을 고려하여 수립 -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기본계획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산업활동 기여도 반영 수립 -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 -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되는 정부 계획은 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수립 ○ 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 위원회는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보고 - 위원회는 평가자문단 설치 또는 전문평가기관 지정·운영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혜택 부여 또는 포상 가능 ○ 다른계획과의 관계 -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계획의 기본이 됨

각 제정안은 5년 주기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복기왕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정부로 규정하고 있음.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사회연대경제위원회의 위원장,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운영·감독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각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기왕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재정투자 등 지원계획 수립, 다부처 과제 조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연대경제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둘째, 현재 일부 개별 사회연대경제조직 근거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같이 상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경우 개별법상 기본계획의 취지 및 목적과 상충될 수 있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중복 수립으로 인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태호 의원안은 기본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본계획과 연계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일부 개별법상 기본계획은 이 법안과 수립주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주기를 일치시켜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법상 기본계획 >

법률명	기본계획	수립주체	수립주기	비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고용부장관	5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계획	기재부장관	3년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기협동조합 활성화계획	중기부장관	3년	중기협동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	공정거래위	3년	소비자 생활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복지부장관	3년	자활기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림부장관	5년	농어업법인 등

※ 자료: 기획재정부

넷째,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행정부담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복기왕 의원안 및 정태호 의원안과 같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한하여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각 제정안은 시·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복기왕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적

경제발전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시·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북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7조(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획재정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여건, 전망 2.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5.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협력 강화방안 7.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육성방안 8. 사회연대경제조직간의 협력 및 네트워	제7조(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정부는 국가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정책 현황과 전망 2. 사회연대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협력 방안 5. 인재육성,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6. 사회연대경제 조직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7. 지원정책의 통합·조정 및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8.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보·통계의 수집·	제7조(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획재정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여건, 전망 2.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5.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협력 강화방안 7.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육성방안 8. 사회연대경제조직간의 협력 및 네트워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크 강화 방안 9. 사회연대경제 분야별·업종별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10.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의 통합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11.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13.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관리 9.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10.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와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연대경제발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크 강화 방안 9. 사회연대경제 분야별·업종별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10.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의 통합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11.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운용방안 및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 12.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14.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 「사회적기업 육성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이하 “시·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중	과 당해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 시행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연대경제발전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을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이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합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과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도별 실적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부문별 및 시·도별 실적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이나 포상 등 필요한 조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이하 “시·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의 시·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제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혜택 부여나 포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지역의 공동체 기반 확충과 사회연대경제 발전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연대경제 기반 확충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회의 등 민·관 협력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연대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 추진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충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 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설립과 시·군·구 연계 지원체계 구축 방안 5. 사회연대경제 공유자산과 공유거점 형성	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도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에 관한 사항 6. 지역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산업을 해당 경제협력권 산업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협력 촉진과 민·관 협력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를 연계·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대학·재단·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시·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사회연대경제 발전 주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계획에 우선한다.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산업활동 기여도를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되는 정부의 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국회보고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수립한 부문별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수립한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복기왕의원안 (제12조)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제20조)	정태호의원안 (제12조)
○ 실태조사: 5년 주기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통계작성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함	○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실시 ○ 통계작성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통계가 국민통계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 실태조사: 5년 주기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통계작성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함

각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실태조사 등과 관련하여 복기왕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 제정안은 실태조사 또는 기초조사 등의 주체로 국가와 지자체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의 중복수행에 따른 비효율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작성주체를 정부(기획재정부장관)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북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	제20조(사회연대경제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통계가 국민통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22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문별 검토(제3장):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가.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북기왕의원안 (안 제13조~제15조)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안 제14조~제19조)	정태호의원안 (안 제13조~제15조)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심의, 관계부처의 정책 조정 - 위원장 1명 포함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민간위원 과반수 구성) - 위원장: 기재부장관 -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 - 국회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의 위원추천 -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처 설치 ○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 - 구성·운영은 조례로 규정	○ 사회연대경제위원회 - 대통령 소속 -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및 국가정책 심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정책 추진 총괄·조정 - 위원장 2명 포함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민간위원 과반수 구성) -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 자 -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사회연대경제기획단 설치 ○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시·도지사 및 기초지자체 장 소속 - 구성·운영은 조례로 규정 ○ 협의 및 조정 -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사업의 연계·통합 및 예산조정을 협의·조정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대통령 소속 -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심의, 관계부처의 정책 조정 - 위원장 2명 포함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민간위원 과반수 구성) -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 자 -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 - 국회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의 위원추천 -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처 설치 ○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 - 구성·운영은 조례로 규정

각 제정안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역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 제정안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① 위원회의 소속을 복기왕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김동아·최혁진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있고, ② 위원회 위원을 복기왕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공동으로, 정태호 의원안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복기왕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국회 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의 위원 추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④ 위원회의 사무지원기구로 복기왕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위원회 소속의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반면,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사회연대경제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주관부처는 사회연대 경제조직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역량이 필요하므로, 각 부처의 정책·제도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가 적절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운영중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등과 일부 중복되므로 현재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하나의 위원회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사무기구 설치가 어려우므로 관련 부처에서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¹⁰⁾

각 제정안의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업무범위 중 시·도별 시행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각 제정안에 위원회 업무로 포함된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역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지자체의 자율성 저해 소지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각 제정안은 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기왕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시·도지사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시·도지사 외에 기초지자체의 장에게도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각 제정안은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의 경우 각 지역의 특성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13조(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사회연대경제위원회) ①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민관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2. 기본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제도의 제정·개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사회연대경제 재원 조달, 사회연대금융 및 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2장에 따른 기본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6. 사회연대경제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9.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 중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6. 민관 협력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연대 촉진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정부 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민간 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발에 관한 사항 6. 사회연대경제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연대금융의 제도 정비 및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고 다른 1명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가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국회의 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제2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대표자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전국 단위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 중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4. 국회의 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제3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제3호의 위원 중 위원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협의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된 경우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의 정책과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해당 지역의 사회연대경제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기관의 장에게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국방·국가안전보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지역 사회연대경제위원회) ① 시·도지사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연대경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기존	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연대경제 부문에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도와 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연대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의 연계·통합 및 예산 조정을 위하여 협의·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둔다. ②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해당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및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

복기왕의원안 (제16조·제17조)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제22조·제23조)	정태호의원안 (제16조·제17조)
○ 한국사회연대경제원 - 기획재정부 소관 - 기재부장관 운영·감독 - 기재부장관 출연 - 그 밖에 자료요구권, 비밀누설금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 시·도지사가 설치·운영(임의 설치) - 직접운영, 민관공동운영, 민간위탁 등 가능 - 정부는 예산과 인력 지원 가능 -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 한국사회연대경제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중기부장관 운영·감독 - 정부 출연 - 그 밖에 자료요구권, 비밀누설금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필수 설치) - 직접운영, 민관공동운영, 민간위탁 등 가능 - 정부는 예산과 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노력 -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 한국사회연대경제원 - 기획재정부 소관 - 기재부장관이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운영·감독 - 정부 출연 - 그 밖에 자료요구권, 비밀누설금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필수 설치) - 직접운영, 민관공동운영, 민간위탁 등 가능 - 정부는 예산·인력 지원 가능, 지원체계 구축 노력 -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각 제정안은 정부가 출연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제원의 소속을 복기왕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기획재정부로,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경제원의 소속은 기획재정부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기관 설립보다는 기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 확대 등을 통해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제정안은 경제원을 설립하여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개발 및 집행기능을 기획재정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하에 통합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일선 집행단위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각 사업간 연계성이 کم에도 주무부처가 분리되어 통합적인 정책지원이 어렵고, 사업관리가 제각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행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추진을 일원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연대경제 관련 현행 지원체계와 제정안 비교 >

구 분	현 행	제 정 안
주요 기능	부처별 소관 사회적경제기업별 설립·창업지원, 교육·홍보, 컨설팅, 판로지원 등 집행업무 수행	중앙단위 지원기관인 사회연대경제원이 사회적경제 관련부처의 정책개발 지원기능과 재정사업 집행기능 수행
지원 체계	협동 조합 (기재부) 사회적기업 진흥원 (고용부) 사회적 기업 (고용부) - 마을 기업 (행안부) - 자활 기업 (복지부) 자활 복지 개발원	협동 조합 (기재부) 사회적기업 진흥원 (고용부) 사회적 기업 (고용부) - 마을 기업 (행안부) - 자활 기업 (복지부) 자활 복지 개발원 사회연대경제원 설립 (기재부 또는 중기부)

다만, 지원기관 통합으로 각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점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임무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자활복지개발원 등 현행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기관과의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중복 및 비효율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 찬반의견이 모두 제기된 바 있으므로, 해당 조문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찬성의견

은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반대의견은 별도로 경제원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상 비효율 발생이 우려되고 공공기관 신설로 국민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음.

< 경제원 설립에 대한 제20대 및 제21대국회 주요 논의 요지 >

구분	찬 성	반 대
제20대 국회	○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형태가 필요하므로 설치 필요	○ 기재부는 거시경제정책 등 전략·정책기능에 충실해야하므로 기재부 산하 경제원 설치 반대
제21대 국회	○ 재정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기재부 산하의적경제원 신설 필요 ○ 자본주의에 충실한 조직인 기재부보다 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이 적절	○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해산하고 별도의 경제원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상 비효율 발생이 우려되고, 공공기관의 신설은 국민의 부담 증대를 야기

다음으로 각 제정안은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복기왕 의원안은 시도지사 재량사항으로, 김동아·최혁진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지자체 차원의 별도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여 개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역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어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16조(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2.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지원 3.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4. 사회연대경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사	제22조(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등) ①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2.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3.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 개발 4.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 5. 사회연대경제 통합	제16조(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등) 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2.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지원 3.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4. 사회연대경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회연대경제 중간지원 조직 육성사업 6.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교류·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교육, 컨설팅 및 홍보 8. 사회연대경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한다. ⑦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경제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6. 사회적 가치 평가 및 측정지표 개발 7. 사회연대경제 교육·홍보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8. 사회연대경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9. 해외 사회연대경제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⑤ 경제원은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사업개발, 역량강화 및 지원사업 등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제원을 운영·감	6.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교류·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교육, 컨설팅 및 홍보 8. 사회연대경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과 협력하여 경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한다. ⑦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경제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경제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독한다. ⑧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경제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원장 및 임원의 임명,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	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경제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 지원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②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민·관공동 운영, 민간 위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민간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 지원센터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지원센터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도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센터(이하 “시·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 협력의 원칙에 따라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 민·관 공동운영, 민간 위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업무범위, 운영방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접운영, 민·관공동 운영, 민간 위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민간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도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복기왕의원안 (안 제18조)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안 제21조)	정태호의원안 (안 제18조)
○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설립 -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및 자자체에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제안 가능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 - 국가 및 지자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 사회연대경제연대조직 설립 - 법인 또는 단체 -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및 협의 권한 - 국가 및 지자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설립 -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및 자자체에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제안 및 협의 권한

각 제정안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업종·부문·분야별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나 연합체 등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을 법정화하려는 취지는 ① 정부의 공식 정책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조직에 보장하거나, ② 해당 조직의 영세한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11) 제정안에 따른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현재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등을 들 수 있음.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은 조직간 자발적 결합으로 설립되는 민간 자율조직이므로, 정부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율적·독립적 운영 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할 경우 정부의 정책협의를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분야 연대조직과의 형평성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가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제정안 제2조제2항12)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율적·독립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복기왕의원안 제2조(기본원칙)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제2조(기본원칙)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정안 원문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대호의원안
제18조(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의 설립)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합조직(이하 “연합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연합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관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 개발, 지역기반 확충, 인재육성 등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④ 연합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의 다양한 연합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 등 사회	제21조(사회연대경제연대조직의 설립)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업종·분야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나 연합체 등 사회연대경제 연대조직(이하 “연대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연대조직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대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의 설립)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합조직(이하 “연합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연합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관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 개발, 지역기반 확충, 인재육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연합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연대경제조직의 성장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조직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연합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조문별 검토(제4장): 사회연대금융 및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가.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안 제24조·제25조)	정태호의원안 (안 제19조·제21조)
○ 없음	○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 사회연대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금융제도 정비 및 재원확보 노력 - 사회연대경제조직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신용협동조합 등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여신 확대 등 추진 ○ 사회연대금융기관 지정 및 육성 -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연대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 가능 - 설립, 지정,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 사회연대경제 발전 재원 확보 및 사회연대금융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등 제도 정비 추진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정부는 투·융자 대상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금융상품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인증기준 및 절차, 사업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김동아·최혁진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사회연대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및 사회연대금융기관 또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지자체가 사회연대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회연대금융 법제화를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제반 영역에 대한 안정화 추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사회연대경제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익창출을 기본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특성상, 사회연대금융의 도입으로 인하여 금융제도 전반의 수익성·안전성 등에 부담을 줄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국가가 사회연대금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과 사회연대금융 법제화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 훼손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모두 있었는바, 심사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사회연대금융에 대한 제20대·제21대국회 주요 논의 요지 >

구분	찬 성	반 대
제20대 국회	○ 사회적배려 차원에서 국가가 사회적금융을 지원할 필요 ○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필요	○ 사회적금융 및 이에 대한 정부 출자출연의 타당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제21대 국회	○ 적어도 금융기관들이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은 필요하고, ‘크라우드펀딩이나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의 조항은 유지할 필요	○ 정부의존형 금융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훼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가경쟁력 훼손을 가져올 우려

※ 제정안 원문

북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24조(사회연대금융의 육성 및 제도 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2.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 및 공시 제도의 도입 3.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상호금융기관 및 비영리 민간재단의 사회연대경제조직 투자 및 여신 확대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제도 정비 4.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19조(사회연대금융 제도정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금융기관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① 정부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투·융자 대상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금융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인증 기준 및 절차,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사업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복지위원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공제기금 및 민·관 협력 도매기금 출연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지원 활성화 5.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수단의 개발 6.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금융제도의 정비 제25조(사회연대금융기관의 지정 및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금융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연대금융기관의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회연대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용자 또는 지원사업 2.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투자·용자 사업 3.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4.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상 위기 시 긴급 구제 금융사업 5. 사회연대경제조직 투자·용자에 따른 손실 보상 6.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금의 운용 및 위탁사업 7. 사회연대경제 공제 기금의 위탁·운영 8. 사회연대경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 ④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사회연대금융기관은 사회연대금융 목적의 출자·용자·투자·기부 등을 위한 모금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회연대금융기관의 설립, 지정, 지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의 조성

북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안 제26조)	정태호의원안 (안 제19조·제20조)
○ 없음	○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국가, 필수설치) - 주요재원 · 국가·지자체 출연금 · 정책기금 전입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 사회연대 금융기관에 위탁운영 가능 - 주요용도 · 사회연대경제조직 금융지원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정책개발 ○ 민간기금 조성 - 사회연대금융기관 수행사업으로 민간기금 조성을 규정	○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지자체, 임의설치) -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금 설치 가능 ○ 민간기금 조성 -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사회연대 금융기관이 설치 가능 - 정부는 출연 등 재정 지원 가능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회연대금융기관의 수행사업으로 민간기금 조성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정태호의원안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금융기관의 민간기금 설치 근거와 함께 정부가 민간기금에 출연 등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의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자생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처별·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기금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측면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은 정부 출연금 이외에는 사실상 안정적인 자체재원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요건¹³⁾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정태호 의원안은 지자체가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

1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법¹⁴⁾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정안 원문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26조(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가는 사회연대금융 정책에 따라 지정된 사회연대금융기관을 기금의 운영기관(이하 “기금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금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존 정책기금에서 전입되는 재원 4. 주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 또는 투자금 5. 기금 운용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 기금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9조(사회연대금융 제도정비 등) ②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금융기관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0조(민간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사회연대금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기금에 출연 등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1. 사회연대경제 발전 과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를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영 2. 사회연대경제조직 지 원을 위한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사업 3. 사회연대금융 중개 기관의 발굴·육성 지 원사업 4. 사회연대금융 활성 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 며, 출연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 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⑥ 기금운영기관의 지 정 절차, 기금 관리· 운영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8. 조문별 검토(제5장):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육성

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등 우대 조치

복기왕의원안 (안 제19조~제24조)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안 제27조~제34조, 안 제37조~제41조)	정태호의원안 (안 제22조~제28조)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용역·공사 우선구매 촉진 ○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지원·용자 및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 ○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근거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용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 노력 ○ 민간위탁 우대 - 국가·지자체 사무 민간위탁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 고려 ○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지원·용자 및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양여 ○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근거 ○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 - 정부는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평가하고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보급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용역·공사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계획 개선권고, 이행점검, 개선조치 요구 가능 ○ 민간위탁 우대 - 국가·지자체 사무 민간위탁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 ○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지원·용자 및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 ○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근거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그 밖의 지원 사항 - (교육훈련)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초·중·고 학생 등에 대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실시 - (협력·연대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간 협력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및 행정·재정·세제 상 지원 - (국제협력) 사회연대경제조직 관련 국제기구 등 교류·협력사업 및 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	○ 그 밖의 지원 사항 - (교육훈련)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공무원·학생·국민 등에 대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실시 - (협력·연대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간 협력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 - (국제협력)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국제기구 등 간 교류·협력사업 기반마련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 · ODA 수행기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관련 협력사업 및 시범사업 운영가능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 근거	○ 그 밖의 지원 사항 - (교육훈련)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초·중·고 학생 등에 대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실시 - (협력·연대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간 협력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및 행정·재정·세제 상 지원 - (국제협력) 사회연대경제조직 관련 국제기구 등 교류·협력사업 및 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

각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생산품 등 우선구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지원,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 감면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조달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역차별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부문 판로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구매 촉진 의무 규정은 수용 가능하나, 일률적인 우선구매 목표 설정은 일반기업과의 형평성 및 공공기관 부담 가중 우려를 고려하여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한하며, 시장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시행현황 ＞

근거법률	우선구매대상	소관부처	우선구매 목표비율 (시행령 등)	비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제품	고용부	×	구매 촉진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제품	기재부	×	구매 촉진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기업제품	복지부	×	구매 촉진 규정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물	복지부	물품·용역 구매액의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중기부	총 구매액의 5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제품	중기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제품	중기부	물품·용역 5%, 공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제품	중기부	총 구매액의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물	고용부	물품·용역 구매액의 0.8%	

※ 자료: 기획재정부, 2024

둘째, 제정안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이 전제가 될 필요가 있음.

셋째,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정부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사회연대경제의 자율적·독립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설립목적 및 운영방식이 상이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획일적·계량적 성과지표 개발은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북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1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물”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물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조세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제27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사회연대경제기업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대상·기준·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물”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물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물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연대경제조직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	제28조(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정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이하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통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의 개발,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은 제3항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물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교류협력 3.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지역클러스터 조성 과 판로 구축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행정상·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24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적정한 대가로 임대·양여할 수 있다. 제30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제 운영을 합리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이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	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3조(민간위탁 우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대할 수 있다. 제24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금,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기금에 기부·출연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교육·훈련 및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은 학교, 평생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학생, 청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민간의 참여와 자원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하여 교류·협력체계 구축, 기금조성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재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 등 2.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 공동사업의 촉진 3. 사회적 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연대경제 공유자산의 조성 및 공동 활용 5.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사업거점 조성 및 판로유통망 구축 등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분야·전국 단위에서 연대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발적인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상·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교류협력 3.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지역클러스터 조성 및 판로 구축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연대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행정상·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28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34조(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사회연대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기업가 발굴,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창업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공간·시설 지원, 활동비 보조,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등 관계 기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이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사업적 제안과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국제협력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류·협력과 해외진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고, 필요한 비용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국제연대협력의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 인권 및 평화 증진 등 국제사회의 공동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공적개발원조의 연계) ① 국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협력 수행기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및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국제개발협력사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업 등의 추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글로벌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수원국 또는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자립 기반 마련 및 인권 보장 등에 기여하도록 기획·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국제연대협력 전담기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정보 교류 및 국제 네트워크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와 정책조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9. 조문별 검토(제6장 및 제7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 및 별치

가. 운영의 공개, 경영공시 및 별치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안 제35조·제36조)	정태호의원안 (안 제29조~제31조)
○ 없음	○ 운영의 공개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회연대경제조직 - 공개범위 · 정관 등 운영 규정 · 총회·이사회 의사록 · 회계장부 및 그 밖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사항	○ 운영의 공개 - 대상: 사회연대경제조직 - 공개범위 · 정관·규약·규정 · 총회·이사회 의사록 · 회계장부 및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없음	○ 경영공시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회연대경제조직 - 공시범위 · 정관 등 운영 규정 · 총회·이사회 의사록 · 사업결산보고서 - 영업상 비밀 등 공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비공개 가능	○ 경영공시 - 전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시범위 · 정관·규약·규정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 사회적기업, 일정규모 이상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시 범위 · 정관·규약·규정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 사업결과 보고서 · 임원 현황 · 사회적가치보고서 등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복기왕의원안 (안 제25조·제26조)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안 제43조)	정태호의원안 (안 제32조·제33조)
○ 벌칙(직무상 비밀누설)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없음	○ 벌칙(직무상 비밀누설)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유사명칭사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유사명칭사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유사명칭사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아·최혁진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 적용 대상을 김동아·최혁진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하고 있고, 정태호 의원안은 운영의 공개는 모든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경영공시는 모든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우 공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이 법률안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일률적인 의사록 공개는 조합원과 채권자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일부 개별 법률¹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운영공개 태만 및 진술·보고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⁶⁾

15)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16)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제정안 원문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25조(벌칙)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5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	제29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②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제3조제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정부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회연대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공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비밀 등 공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제22	2호나목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3. 사업결과 보고서 4. 임원 현황 5. 사회적가치보고서 등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③ 그 밖에 정보공시의 방법 및 횟수,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통합공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각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복기왕의원안	김동아·최혁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조제11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제1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문 의 처
02)6788-5151